

제386회국회
(임시회)

교육위원회회의록

제 1 호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1년4월21일(수)

장 소 교육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771)
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782)
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528)
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289)
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302)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20)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54)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0457)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2124)
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5384)
1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6658)
1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7265)
1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4894)
16.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가. 교육공무직원과 방과후학교·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관련법 개정에 관한 청원(청원번호 2100021)
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74)
18. 교육정보화기본법안(의안번호 2108419)
1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54)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75)
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378)
2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84)
2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87)
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494)
2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77)
2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583)
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02)
2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06)
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35)
30. 국립대학법안(의안번호 2108645)
3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57)

3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674)
3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02)
34.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16)
3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29)
3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68)
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73)
38.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75)
3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79)
4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81)
4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82)
42.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92)
4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794)
4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66)
4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870)
4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33)
4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34)
4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70)
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8976)
5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36)
51. 기초학술기본법안(의안번호 2109082)
52.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의안번호 2109084)
5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092)
5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59)
5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195)
56.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14)
5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109218)

상정된 안건

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1) 4
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82) 4
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8) 4
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89) 4
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02) 4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0) 4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4) 4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7) 4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24) 4
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4) 4
1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8) 4
1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5) 4
1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
1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4) 4
16.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4

가. 교육공무직원과 방과후학교·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관련법 개정에 관한 청원(박정호 외 10만 인 국민동의로 제출)(청원번호 2100021)

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4)	4
18. 교육정보화기본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9)	4
1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54)	4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5)	4
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8)	4
2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84)	4
2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87)	4
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94)	4
2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7)	4
2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83)	4
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02)	4
2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06)	4
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5)	4
30. 국립대학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5)	4
3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7)	4
3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74)	4
3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2)	4
34.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6)	4
3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9)	4
3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68)	4
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3)	5
38.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5)	5
3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9)	5
4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81)	5
4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82)	5
42.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2)	5
4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4)	5
4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66)	5
4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70)	5
4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3)	5
4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4)	5
4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0)	5
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6)	5
5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36)	5
51. 기초학술기본법안(정정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82)	5
52.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84)	5
5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2)	5
5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59)	5
5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5)	5
56.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14)	5

5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18) ……5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유기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6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전체회의는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법률안을 의결하고 3월 말까지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법률안을 상정해서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조경태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771)
2.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782)
3.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528)
4.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289)
5.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병훈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302)
7.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전용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20)
8.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박주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4)
9.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0457)
10.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2124)
1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탄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5384)
12.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강은미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6658)
13.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구자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7265)
14.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5.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4894)
16.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
 - 가. 교육공무원과 방과후학교·돌봄교실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교육관련법 개정

제출)(청원번호 2100021)

1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4)
18. 교육정보화기본법안(金炳旭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19)
19.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54)
20.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윤영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5)
21.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도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378)
22.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84)
23.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87)
2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정경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494)
25.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유기홍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77)
26.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이원욱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583)
2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02)
28.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06)
29.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철민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35)
30. 국립대학법안(조승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45)
31.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57)
32.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674)
33.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02)
34.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16)
35.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29)
36.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박찬대 의원 대

표발의)(의안번호 2108768)

37.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3)

38. **서울대학교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5)

3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송언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79)

40.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81)

41.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82)

42. **서울대학교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강득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2)

43.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794)

44.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66)

45.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870)

46.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3)

47.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박형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34)

48.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0)

49.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황운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8976)

50.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강민정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36)

51. **기초학술기본법안**(정청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82)

52. **학교민주시민교육촉진법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84)

53.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092)

54.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김민석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59)

55.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배준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195)

56. **대학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성일중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14)

5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양정숙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109218)

○위원장 유기홍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57항까지 5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곽상도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줘……

○위원장 유기홍 예, 곽상도 간사님.

○곽상도 위원 지금 우리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내용대로 법안이 올라온 게 아니라 행정실에서 교육부 안으로 임의로 바꾸어서 법안을 상정하러 했다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초지종을, 경위를 정확하게 행정실이란 위원장님께서 먼저 위원들한테 납득이 가도록 설명이 있는 다음에 오늘 회의가 진행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유기홍 제가 알고 있는 것과고는 달리 좀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아마 법안소위 결과 해석상에 약간 혼선이 있어서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자구 수정으로 가능할까 하는 검토가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렇게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제가 얘기를 했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된 대로 왔고요. 중간에 이것을 자구 수정 형식으로 해도 될 것인가에 대해서 법안심사소위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했고 그 과정에서 법안심사소위원님들도 부정적인 의견들이 다수여서 그렇게 안 하는 걸로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곽상도 위원 그런데 지금 위원장님이 자구 심사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위원장 유기홍 아니, 저도 그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곽상도 위원 실제로 고치려고 한 내용은 자구 심사의 범위를 벗어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냥 글자 한두 개 문맥 잘못된 걸 고친 게 아니라……

○위원장 유기홍 그럼, 그럼요.

○곽상도 위원 내용 자체를 고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실의 어느 직원이 왜 이렇게 했는지 분명하게 위원들한테 설명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기홍 그런데 결과적으로 올라온 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한 대로 올라온 것 아닌가요?

○곽상도 위원 아니, 그러면 저희들이 일일이 매번 법안소위에서 논의된 대로 됐는지 확인해야 된다는 건데, 행정실이 어떤 업무를 어떻게 하는지 앞으로 일일이 다 따져봐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행정실을 믿고 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기홍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체계·자구 심사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은 저도 아니라고 했고 법안심사소위원님들도 아니라고 해서…… 그리고 그런 안전장치는 충분히 있다는 것을 좀 믿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선 위원장인 저부터 그렇게 하고요. 또 그런 식의 변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저한테 보고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고 만약에, 그런 변동에 대해서 의논 안 하고 그랬던 전례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없었고요. 이번에도 그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를 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렇게 안 하는 걸로 최종적으로 결정돼서 오늘 여기 왔다는 것,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 광상도 간사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의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위원장으로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상도 위원** 어제 우리 의원실에서 확인한 것은 내용이 달라서 왜 이렇게 됐냐고 하니까 교육부에서 바뀌서 낸 안을 가지고 교육부가 의원실을 찾아 다니면서 일일이 다 확인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 합의가 된 거여서 바꾸려고 했다 이렇게 저는 설명을 들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 당 위원님들은 동의한 바가 또 없다고 합니다.

이러면 법안심사나 법안의 자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하고 내용이 상당히 다릅니다.

○**위원장 유기홍** 우선 국민의힘 위원들께서 거기에 반대했다는 보고까지 제가 다 들었어요. 그런 상태에서는 그것은 양해가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이번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면밀하게 나중에 따져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떤 월권이 있었거나 하는 게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다 해명하거나 그러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제가 두 가지는 확실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올라온 안은 법안심사소위에서 된 대로 과정상 약간 어떤 혼선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대로고 그리고 앞으로도 광상도 간사님께서 생각하시는 대로 법안심사소위에서 된 것과 다른 내용으로 전체회의에 상정되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는 점을 제가 위원장으로서 확실하게 말씀드리고,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좀 면밀하게 따져보고 다음번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그 전에라도 국민의힘 야당 위원님들

께서는 그 과정을 투명하게 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상도 위원** 위원장님, 저는 오늘 이런 상태로 회의 진행을 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행정실의 업무가, 우리가 지금 이 상태대로 그냥 덮으면서 갈 수 있는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위원들이 심사해 놓은 사항 전체를 행정실에서 교육부하고 협의해서 뜯어고치는 것,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났는데……

○**위원장 유기홍** 뜯어고치지 않았지요.

○**광상도 위원** 아니, 고치려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났는데 이것을 그냥 양해해 달라, 바로 됐으니까 괜찮지 않느냐 이 말씀으로 이 법안 전체회의를 지금 진행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정확하게 알고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회의를 어떻게 진행할 거냐 이것을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정청래 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광상도 위원** 아니, 발언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청래 위원** 신청도 못 합니까?

○**위원장 유기홍** 예, 정청래 위원님.

○**광상도 위원** 아니, 그렇게 무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청래 위원** 의사진행발언을 한 번 신청하고 몇 번 발언하는 거예요, 지금?

○**광상도 위원** 그렇게 무례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정청래 위원** 저 의사진행발언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잠깐만요.

간사님이기 때문에 제가 예외적으로 대표해서 말씀하신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드린다는 점 양해해 주시고요.

○**박찬대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다 마치셨습니까?

○**광상도 위원** 아직 다는 못 했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마저 하세요.

○**광상도 위원** 분명하게 이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해명이 되고 위원들이 납득이 되면 그때 회의를 진행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박찬대 위원** 제가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정청래 위원님 약간 양해해 주십시오, 우리 여당 간사님이 그 과정에 대해서 좀 말씀하시려는 것 같으니까.

○**정청래 위원** 제가 먼저 하고 간사님이 마무리

하시는데 좋을 것 같아요. 먼저 하지요.

○박찬대 위원 그러면 먼저 하십시오.

○위원장 유기홍 그러면 정청래 위원님 먼저 하세요.

○정청래 위원 정청래입니다.

야당 측 박상도 위원님의 주장 내용은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소위에서 위원들이 결정한 것을 만약에 행정실 직원이 그것을 고쳤거나 고치려 했거나 그래서 내용 변경을 피했다면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박상도 간사님의 어필은 저는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장께서 명명백백하게 밝혀 주시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위원장께서 확인해 보니 사실이 아니고 변경된 내용이 없다라고 밝혀 주셨으면 그것으로 이해를 하고 오늘의 의사일정을 진행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제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아무리 간사라 할지라도 의사진행발언 신청은 한 번 하는 거고요 그리고 위원장께 의사를 이렇게 진행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마치 위원장하고 일대일로 토론하듯이 이렇게 의사진행발언을 하는 것은 의사진행발언이 아니라 의사진행 방해발언이라는 점을 저는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 교육위에서 지금까지 다른 상임위보다 그래도 원만하게 의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은 위원장의 사회권을 존중하고 항상 손을 들고 발언권을 득한 다음에 얘기하는 것이 있었기에 비교적 우리 교육위가 평온하게 의사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아무리 간사라 할지라도 위원장한테 따지듯이 일대일로 계속 의사진행발언을 득하지 않고 발언하는 것은 앞으로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상도 위원 법사위원장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위원장 유기홍 꼭 위원님, 그것도 좀 과한 발언이시고요. 의제 외의 발언입니다.

박찬대 간사님.

○박찬대 위원 먼저 중간 과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상도 간사님 의견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해하시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제가 좀 보충설명을 드릴게요.

우리 법안소위에 참여하신 분들이 아마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을 텐데요, 이 부분이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관련해서 평

장히 진지한 오랜 토론이 있었습니다.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하나는 대학원생들을 여기에 포함시킬 거냐라고 하는 논의 주머니와 또 하나는 기존에 적용되고 있던 대학생들의 대출과 관련해서 조건을 완화해 주는 두 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조건 완화랑 관련된 부분은 토론이 좀 많이 진행이 됐고요, 대학원생을 포함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사실 토론이 진전되지 않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법안소위 위원장으로서 대학원생을 포함시킬 거냐라고 하는 부분은 뒤로 미루고 먼저 조건을 완화하는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됐던 부분이 이자 면제랑 관련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학업을 마치기 전까지 발생하는 이자에 대해서는 면제해 주는 것이 법 취지에 그리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한테 더 유리한 것 아니겠는가 해서 이 법을 먼저 논의해 가지고 이자 면제 조항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앞쪽으로 와서 대학원생을 ICL 제도에 포함시킬 거냐 굉장히 오랫동안 토론을 해서 대학원생들을 포함시키는 걸로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뒤에 대학생들한테 적용됐던 이자면제 조건이 대학원생한테도 자연스럽게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게 주된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원래 대학원생부터 포함을 한다고 하면 구체적인 조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든가 이자 면제랑 관련된 부분을 대학원생한테도 적용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논의해야 되는데 오히려 뒷부분부터 먼저 적용을 하고 그것을 대학원생으로 넣다 보니까 대학원생들의 이자도 면제해 줄 거냐에 대해서 집중적인 토론이 없어서 이 부분에 대한 이해를 명확하게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당 위원들하고 논의를 해 보니 대학원생도 이자 면제를 해줘야 된다고 하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이자를 면제해 주는 것을 먼저 통과시키고 그러한 조건이 대학원생에게도 적용되다 보니까 직접적인 토론은 없어도 그것까지 포함해 가지고 법안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한 이해를 가졌고요.

그리고 야당 쪽에다가 의견을 물어봤던 것은 뭐냐 하면 대학원생으로 확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처음에는 반대의견이 있었지만 잘 합의가

이루어졌고 이자 면제랑 관련된 부분도 재정부담 측면에서 반대하다가 사실 합의가 이루어졌던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사실은 물어보는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뭐냐면 여당에서 완전히 합의를 해서 이자 면제와 관련된 이 해석 부분에 대해서 이자 면제가 분명히 맞다라고 결정을 짓고 야당에 동의를 구하는 형태가 아니라 우리의 토론 과정 의사록 내용 전체를 살펴보았을 때 야당은 어떤 생각이냐라고 하는 의견을 물어보는 과정이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우리 여당 위원들은 분명하게 대학원생들을 포함시키고 이자를 면제한다는 아주 구체적인 토론은 없었지만 다 위임받아서 토론된 범위 내에서 이자 면제가 맞다라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은 우리가 전혀 다르게 토론했던 내용을 가지고서 결정한 것이 아니고 의사록 내용을 다 살펴보고 토론의 절차라든가 순서까지 보고 난 다음에 우리는 이자 면제에 해당되는 이 부분이 소위에서 잘 토론되고 결론을 내렸더라는 과정은 가졌지만 혹시 야당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을 묻는 과정이었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소위의 토론과 전혀 다른 결론으로 법안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저는 광상도 위원님이 얘기하신, 간사님이 제기하신 그 의견 자체는 100% 수용을 하고요. 다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과정 속에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배준영 위원님 먼저 말씀하십시오. 위원장으로서도 할 말이 있는데요.

○배준영 위원 존경하는 박찬대 간사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박찬대 간사님 말씀 듣고 나니까 더 혼란스럽습니다.

저는 법안소위에서 합의로 통과된 것이 중간에 바뀌어 갖고 잘못될 이런 위기에 있었던 것이 단순히 행정실의 착오인 줄 알았는데 박찬대 간사님 말씀 들어 보니까 여당에서도 이것에 관여돼 있었지 않나 하는 오해까지 더 갖게 돼 갖고 지금 매우 혼란스럽습니다. 행정실의 단순 착오가 아니었다는 것이 제가 볼 때는 더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저는 이렇습니다. 70년 의회의 전통이 있고 교육위는 특히 다른 상임위보다 모범적으로 여야 합의로 잘 이끌어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믿음이 무너져서야 어떻게 위원회가 유지가 되겠습니까? 무신불립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여야 합의를 하고 행정실을 믿으면서…… 저희가 앞으로 일일이 그것 다 봐야 될까요?

그리고 다시 한번 묻고 싶은데, 지금 원래 법안소위 결론대로 나왔다고 결과가 정의롭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과정이 공정했습니까? 그리고 그런 과정이 공정한지 우리 야당 위원이 일일이 앞으로 남은 회기 내에 계속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여당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혼란스러운데 저는 단순히 이렇습니다. 우리 광상도 간사님 말씀을 듣고 행정실에서 착오가 있었으면 행정실 사과를 받고 그것을 매듭짓고 그리고 계속 의사일정을 진행하면 됐는데 이게 점점 더 혼란스러워지는데 위원장님, 이것 매듭을 짓고 가야 되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위원장 유기홍 제가 위원장으로서 좀 말씀드리면 어쨌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어디가 잘못됐는가 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특별히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또 하나는 저는 사전에 어느 정도 과정이 양해가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사전에 충실히 살피지 못한 책임도 있습니다만, 한 가지 저도 좀 유감스러운 것은 만약에 그런 문제의식을 느끼셨다면 그런 것을 아시게 되는 순간 바로 저나 또 법안심사소위원장한테 사전에 확인을 해서 오늘 회의 전에 그런 부분들이 좀 투명하게 서로 양해가 돼서 회의가 진행됐으면 좋았겠는데 그것을 오늘 회의를 못 하겠다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저로서도 사전에 바로잡을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한 상태에서 이 회의가 파행으로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법안심사소위에서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확하게 뭘 결정했는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의 경우에도 대학생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된 원칙이 대학원생들한테 제대로 적용됐는지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그런 문제의식을 가졌던 것 같고 그리고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였고 그리

고 그것이 누군가의 작용으로 임의적으로 변경되지 않고 결국은 바로잡혀서 오늘 회의가 정상적으로 열리게 됐다는 점을 우선 전체적으로 보시고, 그 과정상의 문제가 결과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예를 들어서 오늘 여기에 전혀 다른 안이 왔다든가 아니면 제가 어떤 방향을 가지고 오늘 회의진행을 그렇게 하려고 했다면 그것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정도의 사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지금 회의를 한다 못 한다까지 하시는 것은 좀 과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요.

정경희 위원님, 제가 얘기하는 중에 발언 신청을 하셨는데요 말씀해 주십시오.

○정경희 위원 제가 그날 법안소위 일원으로서 심사했던 것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법치주의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결과를 말씀하셨지만 법치주의에서 결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절차입니다. 절차가 타당성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날 논의한 것과 다른 내용의 법안으로 수정해서 법제화하려고 할 경우에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날 법안 내용을 오늘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자구를 다시 심사해서 고치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절차상의 합당한 방법을 통하지 않고 뒤로 가서 위원들 각자를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고치면 어떻겠느냐는 식으로 하고 다녔다는 것 자체가 절차 위반이에요.

그리고 오늘 박찬대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뭐냐 하면, 법안소위의 간사신데 법안소위 무용론을 얘기하신 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날 법안소위에서 심의한 내용으로 법안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심의한 내용과 다른 것으로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은, 그러려면 우리가 법안소위 뭐 하러 합니까? 그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면 한도 없어요. 제가 그날 오늘 고치려고 했던 그 법안 내용, 대학원생에 대해서 하는 것도 그날 이미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대학원생에 관한 논의를 하자고 말씀드렸더니 그것은 나중에 하자는 식으로 미뤄 가지고 그 논의는 제대로 해 보지도 못하고 무슨 학업이니 학점, 연령 그것에만 논의 시간을 보내다가 결국은 본질적인 것은 회의를 하지 못하고 놓친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일단 그 회의가 일단락됐으면 법안소위에서 확정된 내용을 가지고 법안을 내든가 만약에 그것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우리 상임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을 해서 자구·체계 심

사를 해서 수정을 하든가 둘 중에 한 방법을 택해야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방법을 택해서 하겠다라는 것은 절차상의 심각한 위반입니다.

이런 식으로 상임위원회가 운영되고 법안소위가 운영되면 이제 앞으로 법안소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냥 다음번에……

결과적으로 수정을 시도하지 않았으니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 과정의 중대성을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처사라고 봅니다. 반드시 그 책임 소재를 묻고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셔야 될 의무가 위원장님께 있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기홍 저한테 책임이 있다고 말씀하시니까,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보지요.

자, 법안소위를 했습니다. 했는데 결과에 대한 해석도 좀 다르고 그리고 이 문제가 재논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교육부가 가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법안소위를 다시 열어서 재논의하는 것은 절차상에 맞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법안소위를 한번 했으면 그것은 영원불멸이고 손 못 대는 게 아니라 법안소위 위원들 간에 이 부분을 다시 논의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가 되면 법안소위를 긴급하게라도 열어서 재논의해서 상임위에 회부할 수도 있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문제를 얘기하면서 민주주의 원칙까지 얘기하시는 것은 위원장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당 위원들에 대해서도 그것은 너무 과도하게 비판하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법안소위를 또 열어서 논의를 하거나 그럴 수도 있는 문제인데 그런 얘기들이 좀 오가다가 결국은 원안대로 가자 하는 식으로 최종적으로 얘기가 됐던 거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도 이 문제는 더 재론하지 않고 그냥 하는 게 좋겠다라고 바로잡는 과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야당 위원님들 의견을 무시하거나 이런 방향으로 된 것이 아니라 법안소위에서 그 문제에 대해 굉장히 오랫동안 논의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고 해 놓고 나서 해석상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이 문제를 나중에 확인하는 과정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 자체를, 그런 모든 것을 법안소위 결정을 무시했다는 식으로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좀 과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그 문제의식에 정당함이 있다는 것은 인정하고 정확하게 하겠다고 약속드린 거예요. 그 과정에 대해서 제가 살펴보고.

자꾸 같은 얘기가 반복되는데 위원장 얘기를 하시니까 제가 또 말씀드렸는데요.

윤영덕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해 주십시오.

○**윤영덕 위원** 광상도 간사님을 비롯한 야당 위원님들 문제 제기하신 취지에 대해서 공감하고요. 다만 이 건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심각한 그런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제 의견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법안소위를 하게 되면 정리하는 최종적인 체계·자구 심사는 소위원장님께 위임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전체회의에 법안소위에서 의결된 안이 올라오는 거지요.

이번 건 같은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위임된 개정 법안의 최종적인 문안에 대해서 확인을 해 나가는 과정에서 어떤 해석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건과 같은 것일 텐데요, 왜냐하면 저희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서로 다른 의견들을 이야기하면서 법안심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법안심사소위 위원장이 최종적인 문안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법안소위 위원으로 참여하고 계신 여야 위원님들에게 확인하는 어떤 절차, 그런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인 것 같아요.

(위원장, 간사와 협의)

그것을 위원장님도 약속을 하셨고 법안심사소위 위원장님도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야당 위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 건이 저희 상임위원회, 교육위원회의 법안심사 절차를 그렇게 심대하게……

○**김철민 위원** 의사진행발언하는데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하는데 여야 지도부가 그렇게…… 잘못되신 거지요.

○**위원장 유기홍** 죄송합니다.

지금 회의진행을 어떻게 할 건가, 다른 문제는 어떻게 할 건가……

○**김철민 위원** 발언하는데…… 끝난 다음에 말씀하시는 게 경우에 맞지요.

○**위원장 유기홍** 예.

○**윤영덕 위원** 제 발언 마무리하겠습니다.

○**위원장 유기홍** 윤영덕 위원님 죄송합니다.

○**윤영덕 위원** 기본적으로 법안심사 절차상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를 하고, 그것이 여러 가지 이견들이 있으면 더 그럴 겁니다. 합의는 했지만 경미한 체계·자구 심사를 포함한 최종적인 안은 위원장에게 위임을 하기 때문에 위원장이 그 안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서로 이견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여야 위원들에게 확인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오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법안심사소위원장님과 그다음에 유기홍 위원장님이 절차의 민주성을 훼손하는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확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에 오해가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이해할 측면이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광상도 위원** 어떻게 표현이 바뀌었는지 정확한 위당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법안소위 통과한 안은 이자 면제 조항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대학생의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바꾸려고 했던 것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하고 나서 ‘전문 학사학위과정·학사학위과정을 이수 중인 사람의 경우’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자구 수정이나 이렇게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섰다고 봅니다.

용어 자체가 대학생의 경우고 무슨 무슨 과정에 있는 사람의 경우 이렇게 구체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국회의원이 해 놓은 것을 임의로 누가 고치려고 지금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후가 어떻게 된 건지……

○**박찬대 위원** 위원장님,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서동용 위원** 그것은 정의 규정을 다시 보셔야 돼요.

○**박찬대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위원장 유기홍**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신 데 대한 얘기니까 박찬대 간사님이……

○**박찬대 위원** 광상도 위원님, 그것은 우리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됐던 내용을 사실은 충분히 파악하지 않고 하시는 말씀이고요. 대학생의 정의에 보게 되면 대학원생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학생을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번에 개정이 되었는데, 특히 대학원생

에 대해서 이자 면제 부분을 해 줄 거냐 말 거냐 하는 부분이 우리 의사록 내용을 살펴보니 직접적인 언급은 없더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대학원생을 뺄 거냐 넣을 거냐의 차원이지 그것이 대학생과 이렇게 해서 문구를 고치는 내용은 아니고요. 논의된 내용 자체를 거기다 반영하는 거예요.

○**곽상도 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이게 당초 법안소위 통과된 안은 대학원생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통과가 됐습니다. 그런데 대학원생을 포함 안 하는 쪽으로 지금 바꾸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법안소위 회의록을 봐도 대학원생도 확실히 포함하느냐고 하니까 박찬대 위원장님께서 포함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내용 자체를 지금 고친 겁니다. 이것은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자구를 바꾼 거라고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박찬대 위원** 아니, 의사록을 보면요 그 내용이 뭐냐 하면 대학생을 포함한다는 얘기는 이자 면제에 대해서 포함한다고 구체적으로 얘기한 게 아니라 대출 대상에 대학원생이 들어간다고 하는 부분을 얘기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안소위에서 축조까지 다 완벽하게 맞추지 못하고 큰 틀에서 내용을 협의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개정 법안을 만드는 과정 속에서, 그 조문을 만드는 과정에서 해석 부분을 물어본 거지 그렇게 가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게 아니라니까요.

○**위원장 유기홍**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서로 토론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합의점이 찾아질 것으로 생각했는데 약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5분쯤 됐는데요 일단 10시 50분까지 한 15분 정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계속개의되지 않았음)

정 찬 민 정 청 래 조 경 태

○청가 위원(1인)

이 탄 희

○출석 전문위원

수 석 전 문 위 원	이 승 재
전 문 위 원	박 재 유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교육부

부 총 리 겸 장 관	유 은 혜
차 관	정 종 철
기 획 조 정 실 장	김 문 회
고등교육정책실장	최 은 옥
학교혁신지원실장	이 상 수
정 책 기 획 관	황 성 환
대학학술정책관	설 세 훈
학 생 지 원 국 장	전 진 석

○출석 위원(15인)

강 득 구	강 민 정	곽 상 도	권 인 숙
金 炳 旭	김 철 민	박 찬 대	배 준 영
서 동 용	유 기 홍	윤 영 덕	정 경 회